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9.05.12 (화) 10:00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영웅 의원 외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09년 5월 8일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12일

3. 제안 이유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결로 수입농수산물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업인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농수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유통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근거 마련(안 제6 ~ 안 제9조)
- 마.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규정(안 제10조)
- 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협의를 위한 충청북도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운영(안 제11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결로 수입농수산물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확대 조성,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에 따른 업무가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와 중복성 여부와 부서간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